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고서 등 간행물에 조사·분석 요구주체 명시〉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43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경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환 · 이성윤 · 부승찬 · 박용갑 · 허 영 · 박 정
장철민 · 박상혁 · 김태선 · 조정식 · 최혁진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6. 1. 14.

3. 회 부 일 : 2026. 1. 15.

※ 의안번호 : 1604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분석 및 회답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

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조사·분석 및 회답 결과를 바탕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해당 간행물에 조사·분석 및 회답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조사·분석 및 회답 결과의 활용) 제3조제1호에 따른 조사·분석 및 회답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에 그 조사·분석 및 회답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1)에 따라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외국 입법동향 분석 및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NARS 입법정책, NARS 현안분석, 이슈와 논점 등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음.

1)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규정에 따라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목적이자 주요 직무로서,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입법조사요구를 하면 해당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비공개로 회답하는 업무임. 최근 5년간 국회입법조사처는 연평균 5,100여 건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음.

[표-2] 최근 5년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및 회답 현황

(단위: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5,763	5,071	4,822	4,336	5,650	5,128.4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개정안은 조사·분석 및 회답을 바탕으로 보고서 등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조사·분석 및 회답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분석의 취지와 문제의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²⁾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사·분석 및 회답 업무의 비공개³⁾는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입

2) 개정안의 제안이유

3) 국회입법조사처뿐만 아니라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도서관과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 업무(조사·분석 요구 여부, 요구사항 및 회답 내용 등)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회규정인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에 두고 있음.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국회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회도서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회답
2.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요구에 대한 조사·분석
3.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요구에 대한 조사·분석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외부전문가는 해당 회답의 요구권자 및 주요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회답내용의 비공개) ① 회답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계획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간행물을 통해 조사·분석 및 회답의 요구자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현행 조사·분석 및 회답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의 모델인 미국의회조사처(CRS)를 비롯한 다수의 입법지원기관⁴⁾이 조사 업무의 기밀성을 직무수행의 주요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⁵⁾

둘째, 간행물이 조사·분석 및 회답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조사·분석을 요구한 주체를 명시할 경우 기관의 독자적인 분석이 아닌 해당 주체의 의견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기관의 중립성·독립성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가 조사·회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구분하기 어렵고, 조사·분석 회답의 요구권자와 주요내용에 관한 비공개 원칙과 배치된다는 의견임.⁷⁾

범위에서 회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요구권자가 회답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3. 회답내용이 공개되거나 유출되어 야기되는 논란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가 공개되거나 유출된 회답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경우
5. 원본이 공개된 자료의 번역물에 해당하는 경우
6. 외국의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미 해당 국가에서 공개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4) 유럽의회조사처, 영국의회 하원도서관, 일본 국회도서관, 독일 연방하원 학술지원처

5) 조규범·이재영·배정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p.3-4, 16-17.

6) 「국회입법조사처법」 제2조(지위)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처장)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내용이 보고서로 발간되는 경우 해당 회답을 의뢰한 국회의원과 토론회·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같이 의원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개정취지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015



간행물 명칭			관점	특징	기술방식		분량 (본문 기준)
					본문 및 각주	요약	
보 고 서	심 층	NARS 입법정책 (NARS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중장기적	• 기획주제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입법 및 정책 제안	서술식	개조식	40면 내외
		NARS 입법영향분석 (NARS Legislative Impact Analysis)	중장기적	• 현행법에 대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향 등 분석 •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분야별 영향분석 등	서술식	개조식	40면 내외
	현 안	NARS 현안분석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현재적	• 각 분야의 중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입법 및 정책 과제와 대안 제시	서술식	개조식	8면~ 12면
		이슈와 논점 (Issues and Perspectives)	단기적	•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쟁점 도출	서술식	서술식	4면
		국정감사 이슈 분석 (Policy Issues for Inspection)	현재적	• 주요 감사 현안 분석·정리 및 쟁점 도출 • 연1회 발간	개조식	-	-
	기 타	NARS 브리프 (NARS Brief)	현재적	• 세미나·간담회 등 입법조사처 연구동향 정보 제공	서술식	서술식	2면
기 타	기획·특별보고서 등	-	• 특정 사안이나 시기에 따라 발간되는 보고서 • 기획주제 · 현안에 대한 연구분석 자료집 등	-	-	-	
정 기 간 행 물	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	• 내·외부 전문가의 논문으로 구성된 전문 입 법정책 학술지 • 연3회 발간	-	-	-
	국회입법조사처보 (NARS Magazine)		-	• 국회입법조사처 소식지 • 연4회 발간	-	-	-
	뉴스레터 (News Letter)		-	• 국·영문판 온라인 뉴스레터 • 국문 연12회, 영문 연4회 웹발송	-	-	-
	연차보고서 (NARS Annual Report)		-	• 전년도 업무추진실적 등을 정리한 보고서 • 연1회 발간	-	-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내규」 [별표 1]